

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5년 10월 7일

발 의 자 : 이기동위원외 7인

□ 제안이유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 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 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및 임명·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2조)
- 나.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, 계획의 변경, 시행 결과의 활용 등을 심의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다.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
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
3.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
4.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5.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
6. 기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
2. 지역응급의료계획의 변경
3.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
4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응급의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수당과 여비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,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책임,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내지 4는 생략

5. "응급의료기관"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(응급의료계획의 수립·시행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

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⑤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2.3.25]

제13조의3(응급의료위원회) ①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02.3.25]

제27조(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(이하 "정보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2.3.25>

1. 응급환자의 안내·상담 및 지도
2.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
3.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
4.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·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

5.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

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8월말일까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.

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) 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

가.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및 운영 현황

나.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

다.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

2.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

가.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·훈련계획

나.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

다.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

라.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

마.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

바.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

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제2호의 내용에 대한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5조(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) ①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 10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지역계획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의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) ①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
2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
3. 당해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
4. 시·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5.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
6.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·도의 지역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
2. 지역계획의 변경
3. 지역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
4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지역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